

# 사 천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417호 2015. 9. 3.(목)

## 조 례

- 사천시 조례 제1203호 사천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 ----- 2
- 사천시 조례 제1204호 사천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4
- 사천시 조례 제1205호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 6
- 사천시 조례 제1206호 사천시 공설해수욕장설치 및 시설사용료 조례 전부개정조례 ----- 7
- 사천시 조례 제1207호 사천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 ----- 14
- 사천시 조례 제1208호 사천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 ----- 22
- 사천시 조례 제1209호 사천시 시도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32
- 사천시 조례 제1210호 사천시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 폐지조례 ----- 33
  
- 사천시 조례 제1211호 사천시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 34
- 사천시 조례 제1212호 사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 37

## 규 칙

- 사천시 규칙 제594호 사천시 예산성과금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 ----- 41

## 훈 령

- 사천시 훈령 제304호 사천시 읍·면·동 행정실적심사 규정 폐지규정 ----- 46

회 람										
--------	--	--	--	--	--	--	--	--	--	--

발행 : 사천시 / 편집 : 공보감사담당관 / ☎ 831-2215 / FAX 831-6011

# 사 천 시 공 보

제417(2)

## 조 례

사천시 조례 제1203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9월 3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 사천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강점 하 독립운동과 독립운동 유적지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선열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독립운동 기념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제강점하 독립운동”이란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맞서 시에서 일어난 기미년독립만세운동 등 자주독립운동을 말한다.
2. “일제강점하 독립운동 유적지”란 시에서 자주독립운동의 시발점이 된 곳을 말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417(3)

**제3조(기념사업 대상)** 시장은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독립운동 기념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기미년독립만세운동 재현과 관련된 사업
2. 독립운동 유적지의 기념시설물 설치사업
3. 독립운동의 역사적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관련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보조금의 지원 등)**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417(4)

## 조 례

사천시 조례 제1204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9월 3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6·25전쟁 전후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사천시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란(이하 “민간인 희생자”라 한다) 6·25전쟁 중 민간인으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 배상 및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위령사업”이란 내용과 명칭에 상관없이 국가가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희생자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위령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해당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제4조(지원기준)** 시장은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지원대상 및 업무를 판단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417(5)

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
2.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 받아 민간인 희생자가 시장에게 제1호에 준하여 요구하는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충족하지만 민간인 희생자의 요구가 없을 경우 시장이 자체적으로 지원을 결정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등)** 시장은 사천시에서 발생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인권증진 및 화해 조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위령제 지원
2.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
3. 평화인권을 위한 교육 및 바른 역사교육 사업
4. 그 밖에 민간인 희생자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 절차는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민간인 희생자에 대해 지원하고 있는 사업은 이 조례에 의한 지원 사업으로 본다.

# 사 천 시 공 보

제417(6)

## 조 례

사천시 조례 제1205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9월 3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5항 중 제7호를 신설한다.

7. 지역소득 특화사업 및 주민소득증대 등 시정 특수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용하게 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417(7)

## 조 례

사천시 조례 제1206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공설해수욕장설치 및 시설  
사용료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9월 3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공설해수욕장설치 및 시설사용료 조례  
전부개정조례

사천시 공설해수욕장설치 및 시설사용료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사천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  
라 사천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417(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수욕장”이란 시가 관리하는 천연 또는 인공으로 조성되어 물놀이·일광욕·모래찜질·스포츠 등 레저 활동이 이루어지는 수역 및 육역으로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2. “해수욕장시설”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수욕장 안에 있는 시설을 말한다.
3. “이용자”란 해수욕장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시설사용료”란 해수욕장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수탁자”란 시장으로부터 해수욕장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 또는 단체를 말한다.
6. “위·수탁료”란 수탁자가 해수욕장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대가로 사천시에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해수욕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해수욕장의 개장기간)** ① 시장은 해수욕장의 특성이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사천시 해수욕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해수욕장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을 정하면 개장15일 전까지 공보에 고시하고,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해수욕장 개장 기간 중 이용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한사유와 제한기간 및 시간을 즉시 해수욕장 게시판과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417(9)

**제5조(해수욕장 운영 등)** ① 시장은 해수욕장을 직접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시설의 관리·운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탁자는 일반공개경쟁입찰 방식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시장이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우선 지정 기관이나 단체를 지정할 경우는 제외한다.

④ 수탁자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관리·운영의 내용)**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1.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정비·보수에 관한 사항
2.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3.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해수욕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한 사항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물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 배상 등 책임을 진다.

③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417(10)

1. 관광객에 대한 친절봉사와 시설물의 청결유지
2. 시설사용료 등의 가격표시와 표시가격 준수
3. 시장이 해수욕장 관리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정한 규정의 준수

**제8조(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한 시설을 시에서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위탁 목적을 위반하여 사용하는 등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3. 수탁자가 정상적인 사업수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별표 2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초과하여 징수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의 행정상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 할 경우

**제9조(협의회 구성 및 임기)** ① 시장은 해수욕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둔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사천경찰서장, 통영해양경비안전서장, 사천소방서장, 진주기상대장, 산업건설국장, 보건소장,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사천해양수산출장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해수욕장 인근 지역주민
2. 해수욕장 운영에 필요한 기관단체 및 이해관계인

# 사 천 시 공 보

제417(11)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협회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양수산과장으로 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천시 위원회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회의 등)** ① 협회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9조제3항에 따른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협회회의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협회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협회회의 개최 사실과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최 전날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③ 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에 관한 의견은 각 위원들에게 통보 후 서면으로 제출받을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시설사용료 징수)** ① 해수욕장시설의 이용자로부터 별표 2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시설사용료의 징수기간은 해수욕장의 개장기간으로 한다.

③ 해수욕장시설의 이용자는 시설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시설사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수욕장 시설사용료를 면제한다.

1. 만 6세 이하 및 만 65세 이상인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사 천 시 공 보

제417(12)

**제15조(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조치)** ① 시장은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법 제4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수욕장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준수사항 위반 행위를 하는 자.

2. 전염성 질환자.

3.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다른 이용자들의 사용에 막대한 지장을 주거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

**제16조(피해복구)** 이용자가 고의·과실로 시설물 또는 그 종물을 훼손하거나 멸실한 경우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7조(감독)**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자 또는 이용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417(13)

[별표 1]

조례가 적용되는 해수욕장 범위(제3조 관련)

명칭	위치	면적(m <sup>2</sup> )
남일대 해수욕장	경남 사천시 향촌동 630	500
	경남 사천시 향촌동 630-1	4,247
	경남 사천시 향촌동 630-2	972
	경남 사천시 향촌동 630-3	1,138
	경남 사천시 향촌동 631-1	800
	경남 사천시 향촌동 631-6	3,015
	경남 사천시 향촌동 698-3	348
	경남 사천시 향촌동 698-4	1,144
	경남 사천시 향촌동 710-1	3,412
	공유수면	

[별표 2]

해수욕장 시설사용료(제13조 관련)

시설명	구분	기준	시설사용료
샤워장	대인	1회	1,500원
	소인	1회	1,000원

○ 위 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대인 : 13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 소인 : 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417(14)

## 조 례

사천시 조례 제1207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9월 3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

사천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사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66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물의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417(15)

1.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
2.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
3.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는 영 제69조제2항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제4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해서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 연도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 조정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점용료의 부과·징수)** ① 시장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납부 의무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로서 해당 토지나 건물의 관리인 또는 전체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있는 경우 시장은 그 관리인 또는 대리인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부과·징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 4회 이내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1. 점용기간 1년 미만 : 도로점용허가 시 전액
2. 점용기간 1년 이상 : 회계연도 단위

# 사 천 시 공 보

제417(16)

가. 해당연도 분 : 허가 시

나. 그 이후 연도 분 : 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

③ 시장은 점용료 납부 의무자가 원하는 경우 점용기간 전체 또는 남은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를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점용료가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68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조(점용료의 반환)** ① 법 제63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과 법 제66조에 따라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과오납금의 반환)** 시장은 잘못 납부된 점용료, 그 밖의 부담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잘못 납부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관리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417(17)

**제8조(점용료의 감면)** ① 영 제55조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법 제68조 및 영 제73조를 따르며,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같은 법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을 따른다.

**제9조(준용)** 점용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해서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점용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신청된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점용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사 천 시 공 보

제417(18)

[별표 1]

## 점용료 산정기준 (제3조 관련)

(금액의 단위 : 원)

점용물의 종류		기준단위		점용료 (연간)	
		점용 단위	기간 단위		
1. 전주, 공 중전화, 송 지 전탑 등 상시설물	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개	1년	850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 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 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250
	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4,100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 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 수도관, 지 전력구, 중 정착장치(어 스앵커) 등 지 하매설물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엽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0.1m 이하	길이 1미터	1년	200
		지름 0.1m 초과 0.2m 이하			400
		지름 0.2m 초과 0.4m 이하			850
		지름 0.4m 초과 0.6m 이하			1,250
		지름 0.6m 초과 0.8m 이하			1,650
		지름 0.8m 초과 1.0m 이하			2,050
		지름 1.0m 초과 2.0m 이하			3,100
		지름 2.0m 초과 3.0m 이하			5,200
		지름 3.0m 초과			7,250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0.1m 이하	길이 1미터	1년	300
		지름 0.1m 초과 0.2m 이하			600
		지름 0.2m 초과 0.4m 이하			1,250
		지름 0.4m 초과 0.6m 이하			1,850
		지름 0.6m 초과 0.8m 이하			2,500
		지름 0.8m 초과 1.0m 이하			3,100
		지름 1.0m 초과 2.0m 이하			4,600
		지름 2.0m 초과 3.0m 이하			7,750
		지름 3.0m 초과			10,850

# 사 천 시 공 보

제417(19)

(금액의 단위 : 원)

점용물의 종류			기준 단위		점용료 (연간)
			점용 단위	기간 단위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제외한다)	일시 설치한 것 (1월 미만 점용)	표시면적 1제곱미터	1일	150
		기타	표시면적 1제곱미터	1년	20,700
	돌출간판		표시면적 1제곱미터	1년	9,900
	사설 안내 표지		1개	1년	17,250
	현수막	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	표시면적 1제곱미터	1일	50
		기타의 용도			150
	아치	도로횡단	표시면적 1제곱미터	1년	41,400
		기타			20,700
4. 주차장, 여객터미널, 화물차량대장소, 승객승차장소, 화물적재소, 화물출입로, 화물출입로, 그 밖의 것	건축물	1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55를 곱한 금액
		3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6를 곱한 금액
		4층이상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65를 곱한 금액
	진입로·출입로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그 밖의 것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5. 철도·궤도·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 사 천 시 공 보

제417(20)

(금액의 단위 : 원)

점용물의 종류		기준단위		점용료 (연간)	
		점용 단위	기간 단위		
6. 지하상가·지하실(「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건축물	1층인 건축물	점용 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 금액
		2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7를 곱한 금액
		3층 이상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 금액
	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	토지가격에 0.0075를 곱한 금액			
	그 밖의 것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7. 노점·차량·자전거·판매기·상대기·현금자동입출금기·상품진열대·이와 유사한 것	버스표판매대, 구두수선대		점용 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
	노점·자동차·판매기·현금자동입출금기·상품진열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8. 공사용 판자벽·발판·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	일시 점용한 것		점용 면적 1제곱미터	1일	150
	기타		점용 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 주차장·광장·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유류·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점포·창고 등은 제외한다)			점용 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점용 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1. 제1호 내지 제10호 외의 물건	농업·주택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 판매		점용 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05를 곱한 금액
	기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 사 천 시 공 보

제417(21)

1.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2. 점용료를 연액(年額)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간판 및 사설안내표지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4. 점용료는 1원 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버린다(예: 1,950원→1,900원).
5. 위 표 제2호의 점용물 중 전기관·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둘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 지름은 도로점용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지름으로 한다.
6. 위 표 제2호에서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 단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점용물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

[별표 2]

## 점용료 조정산식(제4조 관련)

연간 점용료의 증가율(%)	적용 증가율(%)	납부할 점용료
1. 10 이상 20 미만	10	전년도 점용료 × 1.10
2. 20 이상 50 미만	14	전년도 점용료 × 1.14
3. 50 이상 100 미만	18	전년도 점용료 × 1.18
4. 100 이상 200 미만	22	전년도 점용료 × 1.22
5. 200 이상 500 미만	26	전년도 점용료 × 1.26
6. 500 이상	30	전년도 점용료 × 1.30

# 사 천 시 공 보

제417(22)

## 조 례

사천시 조례 제1208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9월 3일

##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

사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사천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91조에 따라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라 함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 사 천 시 공 보

제417(23)

2.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대한 직접파손 또는 간접파손 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4. “직접파손부분”이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5. “간접파손부분”이란 직접파손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추후에 파손이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① 타 공사 또는 타 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에 따라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 부담금은 직접파손부분 및 간접파손부분에 대한 복구와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의 시행자가 직접파손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직접파손부분에 대한 복구비용은 징수하지 않는다.

④ 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이를 징수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공사업
2. 전기·가스·유류공급시설 및 전기통신시설 등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 중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

⑤ 제4항에 따라 징수하는 부담금은 해당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징수하여야 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417(24)

**제4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산출)** 제3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 굴착표준 최적 기율기와 복구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 1, 직접파손부분 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행사항은 별표 3에 따르며,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시장이 정한다.

**제5조(부담금의 징수방법 등)** ① 제3조에 따라 원인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징수, 과오납된 비용의 반환 및 이의신청은 법 제94조를 준용한다.

② 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처분은 「지방세기본법」 제91조를 준용한다.

**제6조(부담금의 환부 및 추징)** ① 이미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줄 수 있다.

1. 당초의 허가내용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않아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

2. 도로의 굴착에 의하여 직접 파손된 부분의 면적이 굴착 허가된 면적보다 작아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 된 경우. 다만, 최소 굴착 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반환대상에서 제외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② 시장은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굴착 허가된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도로복구공사를 완료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재시공명령 또는 그 재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도로복구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 사 천 시 공 보

제417(25)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허가를 받아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의 부담금 징수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③ **(다른 조례의 폐지)** 「사천시보도구역내횡단도로설치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417(26)

[별 표 1]

## 도로복구공사굴착표준최적기울기 및 복구비용산출방법(제4조 관련)

- 표준 최적기울기 - 1 : 0.1 (기존 도로는 완전 전압된 견고한 토질로 간주함)
- 최소굴착면적, 최소굴착폭, 간접파손영향구간 및 복구비용

구 분	차 도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도로)	보 도		
		블록 및 화강석류	투수성아스콘, 아스팔트, 콘크리트류	
최소굴착면적	1.2m × 1.2m	1.2m × 1.2m	1.2m × 1.2m	
최소굴착폭	1.2m	1.2m	1.2m	
간접파손영향구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소굴착 및 소규모굴착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25m 구간</li> <li>·굴착깊이가 2.5m미만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3m 구간 (굴착시 절단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방 0.6m까지의 범위)</li> <li>·굴착깊이가 2.5m이상 굴착경계로부터 사방으로 굴착깊이의 1/5까지 범위 (굴착시 파일, 토류벽 등의 미설치 또는 절단기 미사용시는 0.3m씩 추가 가산)</li> <li>·비포장도로 병행굴착 또는 도로 경계선까지의 굴착 아스팔트포장구간에 한하여 굴착 경계로부터 사방 0.3m구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4m구간</li> <li>·보차도 경계 인접부분에 각종 전주 및 표지판 등의 설치를 위한 굴착 2.25㎡ (이 경우 굴착면적은 1m × 1m로 계산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도로의 경우에 준한다.</li> <li>·단, 각종 전주 및 표지판 등의 설치를 위한 보차도 경계 인접부 굴착의 경우에는 블록 및 타일류의 경우에 준한다.</li> </ul>	
복구비용	직접	직접파손부분 복구비	직접파손부분 복구비	
	간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스팔트포장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파손영향구간의 중층 및 표층시공비</li> <li>-굴착구간 및 파손영향구간의 덧씌우기(두께 5cm) 비용</li> </ul> </li> <li>·콘크리트포장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파손영향구간의 콘크리트 표층시공비</li> <li>-굴착구간 및 파손영향구간의 아스팔트 덧씌우기(5cm) 비용</li> </ul> </li> <li>·아스팔트덧씌우기포장도로(기존 노면이 콘크리트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파손영향구간의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표층시공비</li> <li>-굴착구간 및 파손영향구간의 아스팔트 덧씌우기(5cm) 비용</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블록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굴착구간 및 파손영향구간의 표층 시공비 (전체 표층용 블록량의 30%를 새로운 블록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li> </ul> </li> <li>·화강석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파손영향구간의 콘크리트기초 시공비</li> <li>-굴착구간 및 파손영향구간의 표층 시공비</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파손영향구간의 표층 시공비</li> <li>·굴착구간 및 파손영향구간의 덧씌우기(4cm) 비용</li> </ul>
	감독업무비	도로굴착 면적(복구금액) ×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중 건설부분의 공사감독업무 요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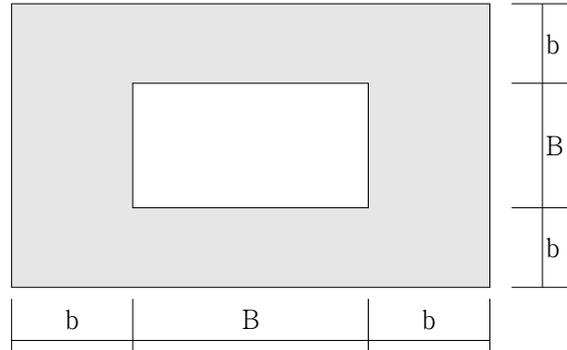
# 사 천 시 공 보

제417(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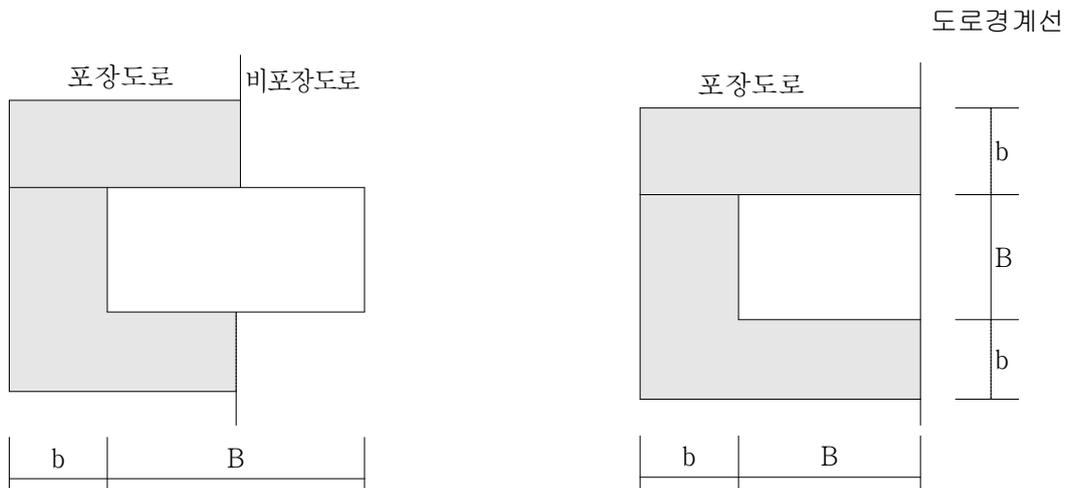
## 3. 굴착폭(B), 간접파손영향구간(b) 및 간접복구단면

### 가. 굴착폭(B) 및 간접파손영향(b)

#### 1) 표준 평면도



#### 2) 비포장도로 병행굴착 및 도로경계선까지의 굴착 평면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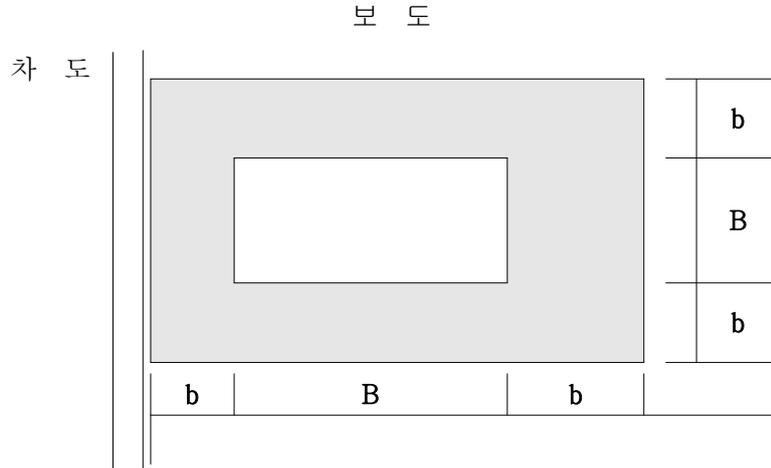


# 사 천 시 공 보

제417(28)

## 3) 보차도경계선 인접부 굴착 평면도 (보도구간)

보차도경계블록(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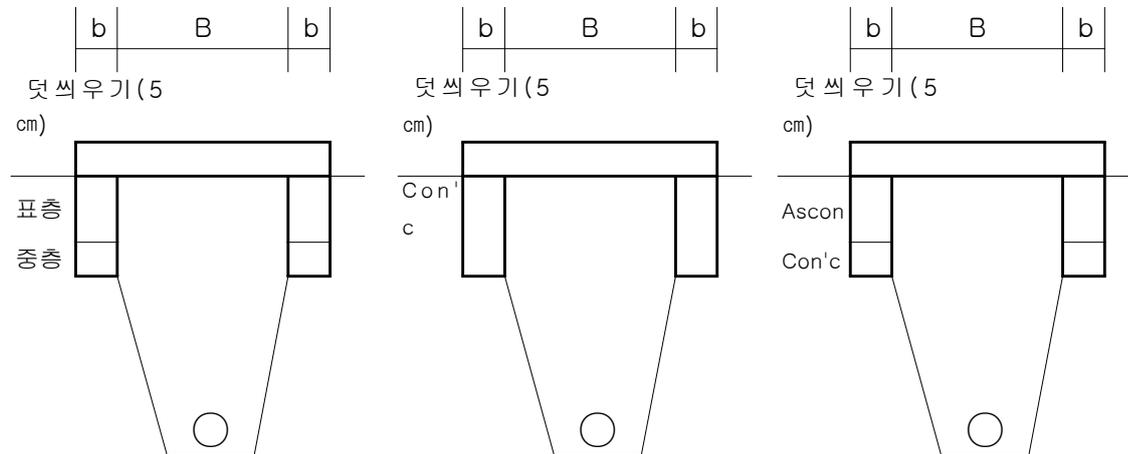
### 나. 간접복구단면

#### 1)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도로

① 아스팔트

② 콘크리트

③ 아스팔트덧씌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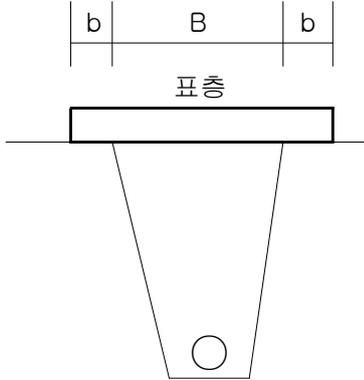


# 사 천 시 공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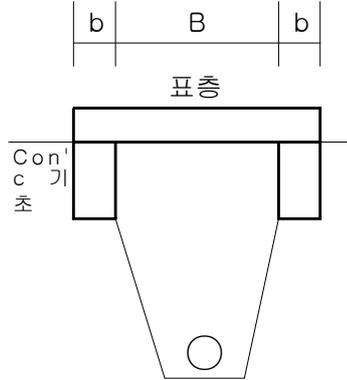
제417(29)

## 2) 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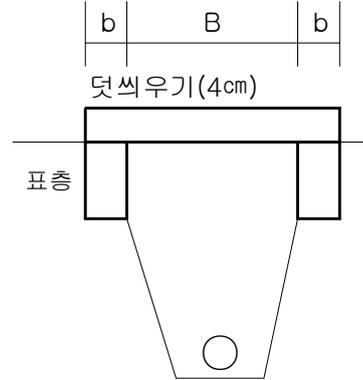
① 블록류



② 화강석류



③ 투수성아스콘,아스팔트,콘크리트류



## 4. 간접복구비 미부과 대상

가. 사업시행자가 굴착구간의 도로폭 전체를 복구하는 경우

나. 보도구간에서 굴착폭외의 잔여 보도폭 합계가 1m미만일 경우

이 경우 보도폭 전체를 복구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가 관리청에 복구를 의뢰할 때에는 직접파손부분 복구비 및 직접파손부분을 제외한 잔여구간의 표층시공비를 직접복구비용으로 징수한다.

다. 차도구간에서 사업시행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굴착구간의 간접파손영향구간을 초과하여 차로 단위로 평삭 정비하는 경우

라. 2인 이상 사업시행자가 동일구간에서 동시 병행굴착시 간접파손영향구간이 중첩되는 경우 감소부분

마. 사업시행자가 도로관리청의 도로정비·개축·신설공사 계획에 따라 병행시행을 위하여 굴착하는 경우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 또는 개량을 위해서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사. 보차도경계블록(석), 도로경계블록(석), 측구, 도로구획선 등 도로시설물의 파손에 대하여 복구하는 경우.

다만, 사업시행자가 관리청에 복구를 의뢰할 경우에는 당해연도 시설단가에 의하여 직접복구비를 산정 부과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417(30)

[별표 2]

## 포장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제4조 관련)

종 별	부 호	적 용 단 면	적 용 범 위	
아스팔트 포장도로	A - 1	표층 : 5cm 기층 : 15cm 보조기층 : 20cm 보조기층 : 40cm	폭 20미터이상 도로	
	A - 2	표층 : 5cm 기층 : 7.5cm 보조기층 : 20cm 보조기층 : 30cm	폭 20미터미만 도로	
콘크리트 포장도로	C - 1	표층 : 20cm 보조기층 : 20cm	폭 6m이상 도로	
	C - 2	표층 : 15cm 보조기층 : 15cm	폭 6m미만 도로	
아스팔트 기층 포장도로	CA - 1	표층(아스콘) : 5cm 기층(콘크리트) : 20cm 보조기층 : 20cm	폭 6m이상	기존 노면이 콘크리트포장인 경우
	CA - 2	표층(아스콘) : 5cm 기층(콘크리트) : 15cm 보조기층 : 15cm	폭 6m미만 도로	
보 도	일반보도블록	표층 : 6cm 모래 : 4cm 보조기층 : 10cm	단, 보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의 경우는 차량통행의 유무에 따라 보조기층의 사용량을 증감할 수 있다.	
	소형고압블록	표층 : 6cm 모래 : 4cm 보조기층 : 10cm		
	화 강 석	표층 : 3~5cm 탈(1:3) : 4cm 콘크리트기층 : 10cm 보조기층 : 10cm		
	투수성아스콘	표층 : 4cm 기층 : 10cm 모래 : 5cm		
	기 타	기존보도의 단면에 준한다.		
보도횡단 차량출입시 설	블 록 포 장	보도블록표층 : 8cm 모래 : 3cm 콘크리트기층 : 10cm 보조기층 : 15cm	단, 기울기가 1/10이상 구간은 모래(3cm) 대신 불임모르터(4cm) 적용	
	아스팔트포장	표층(아스콘) : 5cm 기층(콘크리트) : 15cm	기층은 와이어 매쉬 포함 기층과 표층 사이 텍코트	
	콘크리트포장	표층(콘크리트) : 15cm 기층(골재) : 15cm	기층과 표층 사이 그라우트(접착식) 및 분리막(비접착식) 적용	
	기 타	기존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의 단면 에 준한다		
비 포 장 도 로			시장이 유지관리하는 비포장도로	
기 타 도 로 시 설 물		기존 시설대로 원상복구		

비고 : ① 보도를 복구하는 경우 적용단면은 기존보도의 단면에 따라 그 조정이 가능하며, 전체 표층용 블록량의 30퍼센트는 새로운 블록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기층·보조기층의 재료와 시공방법에 대해서는 도로공사표준시방서에 의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417(31)

[별표 3]

## 도로굴착 및 복구 공사 시 이행사항

1. 도로굴착 공사 시에는 시민통행에 지장이 최소가 되도록 하고 발생토사는 즉시 외부로 반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굴착된 부분은 모래로 되메우기를 한 후 물다짐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굴착된 토사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되메우기 재료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경우 재사용이 가능하다. 이 경우 롤러, 콤팩터, 소형램머 등 다짐 장비를 사용하여 층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고, 각 층(200mm이하)마다 KS F 2312의 C, D, E 방법에 의해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로 균일하게 다짐을 하여야 한다.

3. 포장도로 굴착 시에는 절단기 등을 사용하여 포장 층을 직선으로 절단한 후 굴착공사를 시행하여야 하고, 복구 시에는 신,구 포장의 접합부분을 정교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4. 보도상의 굴착작업은 인력으로 굴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행 공간 확보 등 안전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기계굴착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계굴착으로 인한 굴착부분 이외의 보도블록 파손이나 침하 등 시설물 파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파손발생 시 굴착 원인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비용을 도로관리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5.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에는 착공 전에 구간별 세부공정 계획을 수립하여 굴착 및 복구공사가 단시일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6. 도심지 내의 도로, 주요간선도로 등 교통이 혼잡한 도로의 굴착공사는 교통량이 적은 야간 또는 휴일을 이용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7. 도로굴착공사 시에는 사전에 지하매설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매설물 관리부서와 협의하며, 매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한 후 시행하고, 파손 시에는 해당 소유자나 관리자의 확인 하에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8.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는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도로포장설계·시공지침(국토해양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417(32)

## 조 례

사천시 조례 제1209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시도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9월 3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시도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시도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야생동·식물 보호법」”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문화재 보호법」 제7조”를 “「문화재보호법」 제25조”로, “같은 조 제2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사천시장”을 “시장”으로 한다.

제3조 중 “사천시장”을 “시장”으로 한다.

제5조와 제6조 중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한다.

제7조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라”로 하고, “자”를 “사람”으로 하며,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 417(33)

## 조 례

사천시 조례 제1210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 폐지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9월 3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  
폐지조례

사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칙의 폐지)

「사천시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417(34)

## 조 례

사천시 조례 제1211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9월 3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 사천시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 내 서민과 소외계층의 자녀에게 교육 경비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격차를 해소 하고 동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대상)** ① 사천시 서민과 소외계층(이하 “서민 등” 이라 한다) 자녀 교육지원 대상은 사천시 내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초·중·고 자녀를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3. 그 밖의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서민 등의 가정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사 천 시 공 보

제417(35)

② 제1항에 따른 서민 등 자녀 대상의 선정, 지원 금액, 지원 시기 및 방법·절차 등은 소득수준, 재산상황과 생활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매년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사업의 종류)** 서민 등 자녀를 위한 교육지원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력 향상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
2. 교육여건 개선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서민 등 자녀의 교육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3. 서민 등 자녀 교육경비 지원 대상사업 발굴 및 운영
4. 그 밖에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예산지원)** 시장은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사 천 시 공 보

제417(36)

**제6조(목적 외 사용금지)** 시장은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 사업의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3.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이나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제7조(실태조사)** 시장은 효율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자에 대한 소득수준, 재산상황 등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417(37)

## 조 례

사천시 조례 제1212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9월 3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사천시 사등생활폐기물위생매립장을 말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이란 사천시 사등생활폐기물위생매립장으로 인해 직접 피해를 겪고 있는 향촌동 삼재마을을 말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417(38)

3. “직접 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이란 사천시 사등생활폐기물위생매립장 조성 당시(1998년)의 향촌동 삼재마을 주민으로서 현재까지 향촌동 삼재마을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상금”이란 제2조제1호의 사천시 사등생활폐기물위생매립장으로 인해 직접 피해를 받고 있는 삼재마을 주민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말한다.

**제3조(보상금의 지급)** ①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해 직접 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직접 보상을 할 수 있다. 다만, 보상은 가구별로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은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제4조(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이 조례에 따른 보상금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환경사업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주민대표 3명으로 하며 시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417(39)

⑥ 위원회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상금액
2.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보상에 관한 사항

**제6조(보상금 결정)** 제2조에 따른 피해 보상금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7조(주민지원협의체 구성)** ① 시장은 사등생활폐기물위생매립장 운영에 따른 원활한 피해 보상을 위하여 삼재마을 주민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 주민대표 선정
2. 보상금 협의
3. 보상금 지급 등에 대한 사항

**제8조(보상결정의 통지)** 시장은 보상금 지급이 결정된 즉시 보상금 수령권자에게 보상금 지급 결정서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지급청구)** 보상금 수령권자는 보상금 지급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10조(보상금의 회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417(40)

1. 사기,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과오지급 또는 이중으로 지급 받은 경우

②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회수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연체이자율을 가산하여 회수한다.

**제11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417(41)

## 규 칙

사천시 규칙 제594호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예산성과금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9월 3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예산성과금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

사천시 예산성과금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사천시 예산성과금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부터 제54조까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따른 사천시 예산성과금의 심사,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417(42)

**제2조(예산이 절약된 경우 또는 수입이 증대된 경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0조에 따른 예산이 절약된 경우 또는 수입이 증대된 경우로 본다.

1. 조직 내 업무분담 체계의 변경 또는 조직 내부 부서의 통·폐합 등으로 유희인력을 감축한 경우
2. 정규직원을 고용하여 수행하던 업무를 외부 용역기관 등에게 위탁 수행하게 하고 해당 업무에 종사하던 인원을 감축한 경우
3. 당초 사업계획 수립 시 예정하지 않았던 새로운 기술 또는 공법을 적용하거나, 당초 예정된 공정 또는 예산집행의 순서를 변경함으로써 사업비를 절약한 경우
4. 물품 또는 용역의 발주 및 협상, 계약 상대방의 선정, 공사의 감독 또는 물품의 검수 등 계약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당초 예산보다 예산지출을 감소시킨 경우
5. 청사의 임차 또는 청소 용역의 계약방식 등을 개선하여 기관의 유지·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절약한 경우
6. 일상 업무 추진방식을 개선하여 일용직 인력 또는 외부 용역의 소요 등을 절감함으로써 경상적 경비를 절약한 경우
7. 새로운 징세 기법의 개발 또는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자체수입을 현저히 증대시키거나 징세비용을 절약한 경우

# 사 천 시 공 보

제417(43)

8. 그 밖에 동일한 수준의 행정목적 달성이 가능하고 동일한 수준의 행정서비스 수준을 유지하면서 해당 예산의 지출 소요를 전년에 비해, 또는 당초 계획에 비해 감소시킨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산이 절약된 경우 또는 수입이 증대된 경우로 보지 아니한다.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직제개편 등 단위 행정관서의 내부적인 노력에 의해 인력이 감축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2. 조직 또는 기능의 다른 기관 이양이나 공사화 또는 민영화 등에 따라 신분변동을 초래하고 실질적인 인력 감축으로 볼 수 없는 경우

3. 정원감축 결과 사무실 임차료, 법정 부담금 등 특별한 노력 없이 부수적으로 예산지출 소요가 줄어드는 경우

4. 해당 연도의 예산 절약에 따라 다음 연도 이후에는 예산지출 소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5. 특정사업비 또는 비목의 절약으로 인해 다른 사업비나 비목의 지출소요를 증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6. 환율, 금리, 공공요금의 변경이나 시공기술의 변화 등 관련 공무원의 자발적인 노력보다 당초 계획 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해 지출 소요가 자연히 감소된 경우

7.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당초 사업계획의 취소·변경에 따른 예산절감, 행정전산화에 따라 당연히 수반되는 예산절감 등 특별한 노력에 따른 예산절감으로 볼 수 없는 경우

# 사 천 시 공 보

제417(44)

8. 특정 사업의 폐지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예산의 지출소요가 부수적으로 감소하는 경우

9. 그 밖에 해당 예산의 절약으로 행정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행정서비스 수준의 질적 저하가 예상되는 경우

**제3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① 영 제54조에 따라 사천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공보감사담당관, 세무과장, 회계과장, 투자유치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사천시에 사무소를 두고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등 세무·회계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2. 대학에서 세무 또는 회계학 등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3. 전직공무원으로서 예산·회계·세무 부서에서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예산, 회계, 지방세 분야에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417(45)

④ 위원회의 간사는 예산담당주사가 된다.

**제4조(자체심사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 11조에 따라 자체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되고, 위원은 감사담당주사, 행정담당주사, 세정담당주사, 경리담당주사, 계약담당주사, 투자유치담당주사, 도시계획담당주사, 건설행정담당주사, 농정담당주사가 된다.

③ 자체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자체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담당주사가 된다.

##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규칙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 사 천 시 공 보

제417(46)

## 훈 령

사천시 훈령 제304호

사천시 읍·면·동 행정실적심사규정 폐지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5년 9월 3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읍·면·동 행정실적심사 규정 폐지규정

사천시 읍·면·동 행정실적심사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